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결 정

사 건 명 15-직권-00007 일괄 소지품 검사 등 인권침해

피 해 자 □□여자고등학교 학생들

피 조 사 자 1. ●●●(위 학교 ○학년 ○반 담임교사)

2. ■■ (위 학교 인성인권안전부장교사)

주 문

1. 전라북도교육감에게,

가. 피조사자 1.은 학급에서 학생들의 돈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일괄소지품 검사를 실시하고, 일상적으로 학생들을 책상 위에 무릎 꿇고 앉아있게 하거나, 학생들의 발바닥을 때리고, 학생들에게 '어깨동무하고 앉았다 일어서기' 등의 체벌을 실시하였으며, 학생들의 치마를 점검하면서 은밀한 부위에 서명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학생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인격권 등을 침해하였으므로, 피조사자 1.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권고한다.

나. 피조사자 2.는 위 학교 인성인권부장으로서, 학교장의 명에 따라,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소지품을 검사하여, 학생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피조사자 2. 및 학교장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권고한다.

다. 학교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생활교육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여자고등학교장에게,

교사가 학생들을 체벌하고, 공개적으로 일괄소지품 검사를 하고, 용의복장을 점검하며 치마에 서명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 는 것이므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직원들에 대한 인권교 육을 실시하는 등, 이를 개선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I. 직권조사 개요

1. 직권조사 실시 배경과 목적

2015. 8. 26.(수)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학생인권교육센터"라 한다)에 전화로 제보가 들어왔고, 같은 해 9. 16.(수) 전화로

상담한 것이 3건 있었는데, 그 내용이 학생들 다수에 대한 체벌 및 일괄소지품 검사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사실로 볼만한 상당한 근거 가 있고, 교사에 의해 다수의 학생들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으 로 그 피해정도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직권조사 대상에 해당한 다고 판단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2. 직권조사의 방법

학생인권교육센터는 2015. 9. 16.(수) 직권조사를 결정하고, 같은 달 18.(금)부터 같은 달 25.(금)까지 관련자 면담조사, 관련 자료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Ⅱ.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판단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학년 ○반 소지품 검사 및 체벌 관련

1) ○학년 ○반 학생들의 주장

<소지품 검사 관련>

2015년 1학기 경, 체육대회에서 사용하기 위한 학급티를 제작

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30만원을 걷어 사물함에 넣어두었는데, 그 돈이 없어져서, 실장 △△△이 담임교사(피조사자 1.)를 찾아가서 상황을 이야기하고, 범인이 우리 반에 있을 것이니 소지품 검사를 해달라고 말했다.

피조사자 1.은, 학생들을 교실 뒤로 나가있게 하고, 학생들의 책상과 책가방 등을 열어보면서 검사를 하였는데, 잃어버린 돈을 발 견하지 못했다.

소지품 검사를 할 때, 기분 나빠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돈을 훔친 범인이 아닌 것이 밝혀져서 다행'이라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었 다.

<체벌 관련>

피조사자 1.은, 학생들이 수업 준비를 부실하게 하거나, 수업 시간에 떠들 때, 학생들이 청소를 하지 않는 경우 등 생활상의 문제 가 있을 때, 일주일에 2~3번 정도, 학생들을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 을 꿇고 앉게 한 상태에서, 지적사항을 이야기했다. 때로는 학생들이 무릎을 꿇고 앉은 상태에서 발바닥을 때린 적도 있다(강하게 때린 것 은 아니다).

피조사자 1.은 위와 같이 학생들의 발바닥을 때리기도 하였고, 책상이 없는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벽을 잡고 발을 들게 하여 발바닥을 때렸다.

피조사자 1.이 학생들을 책상 위에 앉게 하고 발바닥을 때리는 경우는, 반 전체 학생을 혼낼 때였고, 학생에게 벽을 잡고 발을 들

게 하여 발바닥을 때리는 경우는 잘못한 학생만 혼내는 때였다.

1학기에 야영을 갔을 때, 학생들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단합도 되지 않았으며,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 피조사자 1.이 학생들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게 했다.

2학기 개학하자마자,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데, 피조사자 1.이 교실로 들어와서 학생들에게 책상을 뒤로 밀게 한 후, '어깨동무를 한 상태에서 3줄로 서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1셋트당 30회 가량으로 하여 2~3셋트 정도 하게 하였다(빈혈이 있는 학생들은 옆으로 나와서의자를 들고 서 있게 했다).

2) 피조사자 1.의 주장

<소지품 검사 관련>

2015년 1학기 경 한 학생과 실장이 찾아와, 한 학생의 사물함에 있던 돈 30만원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하고, 학생들의 소지품 검사를 해달라고 말했다. 학급에 가서 "선생님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밖에 없으니 이해해 달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아무 학생도 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 소지품 검사를 하였다.

당시 소지품 검사를 한 결과 파우치, 고데기, 담배 등을 발견 하였고, 돈은 발견하지 못했다.

<체벌 관련>

학생들이 잘못하는 경우에 학생들 전체를 책상위로 올라가게 한 후 무릎을 꿇게 하였으며, 올해 들어 대여섯 번 정도 그렇게 한 것 같다.

학기 초 3~4월에는 상당히 많이 위와 같이 시켰고, 5~6월경에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는데, 학생들이 일주일에 2~3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3~4월을 포함해서 평균을 내어 이야기한 것으로보인다.

치마를 입은 학생들을 무릎 꿇게 한 경우, 학생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어, 정면에 서지 않고 좌우측으로 빠져서 이야기하였다.

발바닥을 때릴 때는, 위의 경우처럼 책상에 무릎 꿇게 한 상 태에서 때리거나, 학생들이 의자나 벽을 잡고 다리를 들게 한 후 때 리기도 했다.

학생들이 1학기에 야영을 갔는데, 학생들 사이에 왕따 문제(한 방에서 다툼이 일어나 한 학생이 그 방에서 거의 쫓겨 나왔는데, 다른 방에서도 이 학생을 받아주지 않음)가 발생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어깨동무하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40회 가량 시켰다.

2015. 8. 20. 2교시 경, 우리 반에서 교과수업을 하던 ◈◆◆ 선생님께서 상당히 화가 나, 담임인 본인이 학생들을 혼내겠다고 이야기했다.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에게 '책상을 뒤로 밀라'고 말하고, 학생들에게 '어깨동무하고 3줄로 서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2~3셋트(셋트당 30회 가량으로 하여 총 40~50회 정도)하게 했다.

당시 빈혈이 있는 학생들(♡♡♡, ♥♥♥)에게는 의자를 들고

서 있게 시켰으나, 3분가량 지나서 학생들이 힘들어 하기에 의자는 내리고 손을 들고 있게 했다.

치마 입은 여학생들이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는 경우에 학생들이 수치심이나 모욕감 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학생들을 교실 뒤쪽으로 향하도록 하여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켰다.

나. ○학년 일괄 소지품 검사 관련

1) 학생들의 주장(○학년 ○반~○반 실장, 부실장 13명 면담결과)

2015. 9. 16.(수) 1교시부터, 5명 정도의 선생님들이 돌아다니면서, 3학년 각 반 교실(가방, 책상, 사물함 등)과 화장실 등에서 소지품을 검사했다.

각 반마다 차이가 있지만, 소지품 검사를 할 때는 보통 남자 선생님 1명이 교실 앞에 있고, 여자 선생님 1명과 남자 선생님 1명이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의 가방과 책상을 살펴보았으며, 남자 선생님 2 명이 교실 뒤쪽으로 나가 있는 학생들의 용의복장과 사물함을 살펴보 았다.

소지품 검사를 하면서 나온 물건들은 대부분 화장품이었는데, 한 학생의 가방에서는 속옷(그 전날 친구 집에서 잤음)이 나와 그 학 생이 무척 창피해했다. 어떤 여자 선생님은 한 학생에게 '위생용품(생 리대)을 달라'고 말하여 아주 창피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1학기 중(정확히 언제인지는 기억나지 않음), 각 반 담임선생님이 '동의서'라는 것을 가져 왔고, 이 동의서는 모든 학생들이 제출

한 반도 있었고, 일부 동의한 학생들만 제출한 반도 있었다.

2) 학생들 설문조사(○학년 ○반, ○반,○6반 총 64명 답변) 결과

2015. 9. 16.(수) 일괄소지품 검사에 대하여, 64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조사는 당시 있었던 상황과 느낌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으며, 학생들이 기술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술 내용	답변수(건)	비율(%)
수치스러웠다.	13	20.3
기분이 나빴다. 불쾌했다.	45	70.3
복장을 들춰서 검사했다.	12	18.7
복장, 소지품 검사를 남자 선생님이 하는 것은 부당하다.	18	28.1
아무렇지 않다.	2	3.1
1학기 때 소지품 검사 동의서를 강제로 냈다.	8	12.5

3) 피조사자 2.의 주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교육적 차원에서 학생들의 치마와 복장에 대한 지도를 부탁하였고, 또한 아파트 계단에서 학생들이 흡연과화장을 하면서 소란을 피운다는 항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와, 학교 방송을 통해 수차례 주의를 주었음에도 계속 그런 일이 발생했다. 그래서 학교에서 소지품을 검사하여,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위와 같은 상황을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장의

허락과 지시를 받아, 2015. 9. 16.(수) 1교시부터 3교시까지, 인성인권 안전부 소속 교사 5명과 함께,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지품을 검 사했다.

1학기 때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 사업과 관련해서 '소지품 검사 동의서'를 받았는데, 내기 싫다는 학생들은 받지 않았고, 낸 학생들 것만 받았다.

당시 소지품 검사를 통해 압수한 물건은 화장품, 고데기, 사복, 휴대폰 등이었는데, 휴대폰과 사복은 학생에게 사유를 듣고 돌려주었으며, 화장품은 부모님의 동의가 있는 학생들과 개인진로(미용 관련 진로 희망 학생)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돌려주었다. 나머지는 수능이후에 돌려줄 예정이다.

다. 용의복장 지도 관련

1) 학생들의 주장(○학년 ○반~○반 실장, 부실장 13명 면담결과)

학생들이 교복 치마를 줄여 입는 경우가 많은데, 피조사자 1. 이 이를 발견하고, 기한을 정한 다음에 줄인 치마를 다시 원래 길이로 하여 확인을 받으라고 말한다. 이러한 조치를 받은 학생들이, 다른학생의 치마를 가지고 가 확인을 받고, 본인의 치마는 그대로 입고다니는 경우가 생기자,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피조사자 1.이 교복 치마를 확인했다.

현재 2, 3학년 학생들 중 상당수가 피조사자 1.에게 교복 치마를 확인받았는데, 그 방법은 피조사자 1.이 사인펜이나 매직으로 교복

치마허리(벨트 부분) 안쪽에 붙어 있는 라벨에 서명하는 것이다.

2) 피조사자 1.의 주장

학생들의 교복 검사를 하면서, 치마 길이가 짧아 이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학생들이 '고쳐오겠다'고 말 한다. 학생들 중 일부는 실제로 치마 길이를 원래대로 하지 않고, 다 른 친구들의 치마를 가지고 와 확인을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처음에는 같은 학생인 선도부장에게 '치마에 서명하라'고 시켰는데, 이후 학생들이 자기가 서명하고 선생님이 확인해주었다고 우기는 경우가 발생하여 방법을 바꾸었다. 학생들이 쉬는 시간 등에 찾아와서, '선생님 빨리 확인해주세요'라고 말하여 노란색 라벨 부위를 보여주면 펜만 대고 써주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설문조사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인정사실과 판단은 다음과 같다.

가. 인정사실

- 1) ○학년 ○반 학생들에 대한 소지품 검사 및 체벌 관련
 - 가) 소지품 검사 관련

- (1) 2015년 1학기 경 ○학년 ○반에서, 학급티를 만들기 위해 학생들이 모은 돈 30만원이 분실되자, 피조사자 1.은 위 돈을 찾기위해 학생들을 뒤로 나가도록 한 후,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각 학생들의 책상과 가방을 열어보는 등의 방법으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였다.
- (2) 피조사자 1.은 위 소지품 검사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하 였으나, 학생들에게 명시적, 직접적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
- (3) 피조사자 1.은 위와 같이 소지품을 검사하였으나, 학생들이 잃어버린 돈 30만원을 찾지 못하였다.

나) 체벌 관련

- (1) 피조사자 1.은 학생들이 잘못하는 경우 등에, 반 전체 학생들을 책상 위로 올라가 무릎을 꿇게 한 후 학생들을 훈계하거나 지도하였는데, 그 횟수는 2015. 3. ~ 9. 동안 최소 5~6회 이상이었다.
- (2) 또한, 위와 같은 상태에서 피조사자 1.은, 자신이 평소가지고 다니는 나무막대기로 학생들의 발바닥을 때리고, 학생 개인이 잘못한 경우에는, 벽을 잡고 발을 들게 한 상태에서 해당 학생의 발바닥을 때렸다.
- (3) 2015학년도 학생들이 1학기 아영을 갔을 때, 피조사자 1.은 학생들을 지도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어깨동무하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약 40회 하게 하였다.
- (4) 2015. 8. 20. 2교시 경, 다른 교사가 교과 수업을 하는중에 ○학년 ○반 학생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조사자 1.

이 ○학년 ○반 교실에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책상을 뒤로 밀게 한후, 학생들에게 '어깨동무하고 3줄로 서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2~3셋 트(셋트 당 30회 가량으로 하여 총 40~50회 정도) 하게 하였다.

2) 일괄 소지품 검사 관련

- 가) 2015. 9. 16.(수) 1교시부터 3교시까지, 위 학교 인성인권안전부 소속 교사 5명(피조사자 1. 2. 포함, 남자 교사 4명, 여자 교사 1명)은 학교장의 명에 따라, 학생들의 흡연, 용의복장 불량, 화장 등을이유로 ○학년 ○반부터 ○반까지 교실(책상, 책가방, 사물함 등), 화장실 등에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였다.
 - 나) 위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면서 학생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 다) 당시 소지품 검사를 통해 압수한 물건은 화장품, 고데기, 사복, 휴대폰 등이었다.

3) 용의복장 지도 관련

- 가) 피조사자 1.은 학생들의 용의 복장과 관련하여, 교복 치마 길이 등을 지도하면서, 교복 치마 길이를 줄인 학생들에게 원래 상태 로 수선하여 올 것을 지시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검사 를 받도록 하였다.
- 나) 학생들이 치마 길이를 원래 상태로 하여 검사받을 때, 피조 사자 1.은 학생들의 치마 벨트 안쪽에 붙어있는 라벨에 "전"이라고

서명하였다.

다) 위와 같이 교복 치마에 피조사자 1.의 서명을 받은 학생은 상당수에 이른다(서명을 받은 곳이 교복 치마 안쪽의 라벨이어서, 이를 구체적으로 학생들에게 확인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수치심을 줄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학생들이 몇 명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학년 ○반 학생들에 대한 소지품 검사 및 체벌에 대하여

가) 소지품 검사

"「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 제2항은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해서는 안된다. 소지품의 검사 또는 압수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에 한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는 지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교사가학생들의 소지품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① 학생이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이, 학생 또는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는예측이 가능하여야 하고, ②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학생의 동의를구하여야 하며, ③ 소지품을 검사하면서 검사 장소, 검사자, 검사 방법(예, 가방, 주머니, 신체접촉 등) 등을 고려하여 소지품 검사를 받는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15-학인-00036 전라북도학생인권심의위 2015. 9. 24. 결정)."

위 인정사실 1)-가)-(1)항과 같이, 피조사자 1.은 위 학교 ○학년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소지품을 검사하였는데,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소지품 검사의 첫 번째 요건은, "학생 또는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어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 1)-가)-(1)항과 같이 피조사자 1.이 소지품 검사를 한목적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잃어버린 돈 30만원을 찾기 위한 것으로, "학생 또는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소지 가능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소지품 검사를 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소지품을 검사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두 번째 요건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학생의 동의를 구해야"하는데, 위 인정사실 1)-가)-(2)항과 같이 학생들에게 명시적, 직접적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세 번째 요건은 "소지품을 검사하면서 검사 장소, 검사자, 검사 방법(예, 가방, 주머니, 신체접촉 등) 등을 고려하여 소지품 검사를 받 는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 1)-가)-(1)항과 같이 공개적으로 다른 학생이 학생의 소지품을 모두 볼 수 있는 방법 으로 실시하였으므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2015년 1학기 경, 피조사자 1.이 ○학년 ○반에서 해당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일괄 소지품 검사는, 해당 학생들의 사

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피조사자 1.이 위와 같이 소지품을 검사한 이유는, 학생들이 모은 돈(학급비)을 잃어버려 이를 찾기 위한 것이었는데, 만일위 인정사실 1)-가)-(3)항과 다르게, 어떤 학생의 소지품에서 돈을 찾았다면, 그로 인해 그 학생은 학교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돌이킬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공개적 일괄 소지품 검사는 학생인권침해 외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실에서 물건이 분실되었을 경우 공개적이고 일괄적으로 소지 품 검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므로, 다른 학교 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나) 체벌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조례 제3조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존재이며,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는 존재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와 조례 제9조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 간접적인 방법의 체벌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는 것은,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서, 해당 학생의 신체의 자유 및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권리를 침해당함으로써 학생은 모욕감 등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체벌은 학생의 인격권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인정사실 1)-나)-(1)항과 같이, 학생들을 책상 위에 무릎을 꿇고 앉게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줄 수 있으므로 간접체벌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고, 특히, 치마를 입은 여학생들에게 무릎을 꿇도록 하는 것이므로, 학생들이 느낀 수치심과 모욕감의 정도는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사실 1)-나)-(2)항과 같이 피조사자 1.이 학생들의 발바닥을 때린 행위는, 비록 때리는 강도가 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체에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직접체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사실 1)-나)-(3)항, (4)항과 같이 학생들에게 '어깨동무하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키는 것은, 학생들의 신체에 직접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에게 고통 및 수치심 등을 주기에 충분하므로 간접체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위 인정사실 1)-나)-(4)항의 경우처럼 치마를 입은 여학생들에게 '어깨동무하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킨 것은, 학생들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인다. 하지만, 당시 피조사자1.은 이런 점을 감안하여 학생들을 교실 뒤쪽 방향으로 앉게하고, 피조사자 1.은 교실 앞쪽 측면에 있었던 점 등을 살펴보았을

때, 위 피조사자 1.에게 그러한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일괄 소지품 검사에 대하여

"「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조례 제13조 제2항은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해서는 안된다. 소지품의 검사 또는 압수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에 한하며,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는 지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의 소지품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①학생이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이, 학생 또는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여야 하고, ② 이러한 상황을설명하고, 학생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③ 소지품을 검사하면서 검사 장소, 검사자, 검사 방법(예, 가방, 주머니, 신체접촉 등) 등을 고려하여 소지품 검사를 받는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15-학인-00036 전라북도학생인권심의위 2015. 9. 24. 결정)."

2015. 9. 16. □□여자고등학교의 교사들이 실시한 소지품 검사 (교실과 화장실 등)가 위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보면,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소지품 검사의 첫 번째 요건으로, "학생 또는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야 하는데, 위인정사실 2)-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조사자 2. 등 교사들이 소지품

을 검사한 목적은, 학생들의 흡연, 용의복장 불량, 화장 등을 지도하고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학생 또는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과 관련이 없으므로, 소지품 검사를 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소지품을 검사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두 번째 요건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학생의 동의를 구해야"하는데, 위 인정사실 2)-나)항 및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았듯이,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 요건은 "소지품을 검사하면서 검사 장소, 검사자, 검사방법(예, 가방, 주머니, 신체접촉 등) 등을 고려하여 소지품 검사를 받는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하는데, 인정사실 2)-가)항과 같이 공개적으로 다른 학생이 학생의 소지품을 모두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므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2015. 9. 16. 위 학교의 교사들이 실시한소지품 검사는, 학생 또는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학생들이 소지하였다고 예측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모든 학생이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괄적으로 행한것으로서, 소지품을 검사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는 학생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여학생들의 개인 소지품 및 복장(치마) 점검을 남

자 교사들이 하는 경우, 이로 인해 학생들이 받게 되는 수치심 및 모욕감은 여자 교사들이 하는 것보다 그 정도가 심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복장, 소지품 검사를 남자교사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학생들(28.1%)이 많고, "기분나쁘고, 불쾌"한 감정(70.8%)을 넘어서 "수치스러웠다"고 까지 주장하는 학생들(20.3%)이 많은 바, 이는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였다고 까지 판단가능하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여학생들의 용의복장 등과 관련하여 지도가 필요하다면, 남자 교사들보다는 여자 교사가 지도하는 것이 학생들이 받게 되는 성적수치심, 불쾌감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다른 학교에서도 위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 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용의복장 지도에 대하여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례 제3조 제1항은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학생은 인격적 존재로 존중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3)항과 같이, 남자 교사가 여학생들의 용의복장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여학생들의 옷에 서명하고, 더구나 그 서명을 하 는 부분이 타인에게 쉽게 보일 수 있는 곳이 아닌 은밀한 부분이라 면, 그러한 행위는 해당 학생들에게 성적수치심과 모욕감을 줄 수 있 으므로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입고 있는 치마의 벨트 안쪽은 쉽게 타인에게 보여주는 부분이 아니고, 옷을 입고 벗을 때 보이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해당 부분은 여성의 옷 중에서 은밀한 부분이라고 할 수있다. 그러므로, 감수성이 예민한 여학생들이 아니고 일반적인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부위에 타인이 서명한 옷을 입어야 하는경우,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고 자존감에 상처를 입을 수 있다.

피조사자 1.이 직접 서명한 경우, 다른 학생(선도부)이 서명한 경우, 해당학생이 직접 서명한 경우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치마 안쪽에 타인의 이름을 써서 입을 수밖에 없었다면, 해당 학생이 성적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감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수 있으므로, 피조사자 1.의 위와 같은 행위는 해당 학생들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자존감에 상처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기타

위와 같은 학생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은,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 방식을 선택함에 있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고려하지 않고, 성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 다.

특히, 여학교에서 남자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때는 남학생

들을 남자 교사들이 지도할 때와 다르고, 훨씬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특수한 점을 반영하여 학생들의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Ⅲ.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49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6. 21.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장 임송 (서명)

[별지: 관련 규정]

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사생활의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나.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다. 「초・중등교육법」

-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 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마.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의 인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만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 하다.
-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교육과정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 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학교의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 ②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해서는 아니 된다. 소지품의 검사 또는 압수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에 한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는지양하여야 한다.
 - ③ ~ ⑤ (생 략)